

2025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지원[B-라이콘] 모집 공고문

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“2025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[B-라이콘]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5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지원[B-라이콘]
- 나. 사업목적 : 해외시장 진출 희망 소상공인 대상 수출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전환 촉진
- 다. 사업기간 : 2025년 4월 ~ 12월
- 라. 지원대상 및 규모 : 부산 소재 수출희망 소상공인 7개사
- 마. 지원내용 : 수출역량 확보, 수출교육, 수출상담회 참여, 사절단 파견 등

2. 참가기업 모집

- 가. 모집기간 : 2025. 4. 18.(금) ~ 5. 1.(목)
- 나. 모집대상 : 부산소재 수출희망 소상공인 중 제조업 및 도·소매업 해당 → **참고 1 (소상공인 확인기준)**
 ※ 불법, 사행성, 유희,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분야 업종 제외 → **참고 2 (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)**
- 다. 신청방법 및 절차
 -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접속(<http://trade.bepa.kr>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
 ※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된 회원은 로그인 후 모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
 - ② 상단의 메뉴 중 “지원사업” 선택 → 좌측 메뉴 중 “무역대응력” 선택
 - ③ “2025 부산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지원[B-라이콘]” 선택 → 좌측하단의 “참가신청” 선택
 - ④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
 ※ 압축파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라며, 오류가 발생할 경우,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3. 세부 지원내용

- 가. 수출역량 확보
 - 전문 컨설턴트와 1:1 수출역량 진단
 - 기업별 수출 역량강화 및 집체교육 2회
- 나. 수출 교육 : 수출원스톱센터 교육프로그램 중 수강희망 교육 3회 참여
- 다. 수출상담회 : 진흥원 개최 국내 수출상담회 2회 참여
- 라. 사절단 파견 : 현지 비즈니스 상담회 참여 및 산업시찰 등 (**하반기 중 참가기업 현지 말레이시아 파견**)
- 마. 비용지원: 1사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 표의 ①, ② 항목 중 자유롭게 선택

지원항목		지원내용	비고
수출 역량강화 ①		· (온라인 입점지원)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비용 지원	※ 참가기업 지출 후 연말 사후정산
		· (홍보·광고) 카달로그, 홈페이지, SNS 게시물 등 외국어 홍보물 제작	
		· (규격인증)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격인증 및 특허 취득, 상표등록	
		· (통관·물류) 제품 수출을 위한 통관 및 물류 서비스 활용	
		· (현지 시장조사)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희망국 현지시장 및 바이어 조사	
사절단 파견	항공료 ②	· 출장자 1인 왕복 항공료 50% - 1사당 1인, 이코노미 기준, 진흥원 출장자 운임 한도 내 지급	-
	현지 상담회 제반사항	· 바이어 섭외, 사전 마케팅, 상담장 임차, 통역원 섭외, 단체차량 등	
1사당 지원금 한도		4,200천원 (①+②)	

※ 참가기업 부담 : 지원한도 초과분, 부가세, 사절단 파견 숙박비 등 현지 체류비

※ 유사 부산시 및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

3. 신청기업 제출서류

제출구분	제출서류
필 수	① 사업자등록증(소재지, 업력, 업태, 업종 확인) ② 소상공인확인서 1부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/)에서 발급 ③ 공장등록증(자체생산) 또는 OEM계약서(OEM생산) 1부 ④ 최근 3년간(2022-2024) 재무제표(기업 수익성, 성장성 확인) ※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※ 없을 경우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제출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종업원 수 확인) ※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 가능 ⑥ 사업 참여계획서
보 유 시	⑦ 해외 규격·인증 사본(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) ※ 각종 해외 규격·인증은 사업 진행기간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⑧ 최근 3년간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표창, 인증서 사본 -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 경제 관련 표창 - 전년도 고용창출 기업, 일·가정 양립 우수기업(부산시 인증) - 청년고용 우수기업(부산시 인증) - 부산경제진흥원 스타 소상공인 발굴·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 ※ 표창, 인증서 등은 2022년도 이후에 정부·지자체·유관기관에서 수상·발급한 것만 인정 ⑨ 최근 2년간(2023-2024) 수출실적증명서(수출 경쟁력 확인) ※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가능 ⑩ 수출 희망국 외국어 카탈로그

※ 그 밖에도 주관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,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선정결과 통보 : 2025. 5. 5.(월) 限

※ 선정결과는 선정 및 예비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, “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”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신청관련 문의 :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김진혁 주임

가. 주 소 :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

나. 연락처 : 전화 051- 600- 1825 / E- mail kjh0452@bepa.kr

2025. 4. 18.

부산경제진흥원장



【소상공인 확인기준】

① 연평균매출액 +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

소상공인 기준(연평균 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

제2조(정의)

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, 이외 업종: 5명 미만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▶ **(연평균매출액)**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 -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
- ▶ **(상시근로자수)**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 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, 기타업종은 5인 미만

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

업종 (*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)		소기업기준 (평균매출액)	상시근로자 기준
A. 농업, 임업, 및 어업		80억원 이하	5명 미만
B. 광업		80억원 이하	10명 미만
C. 제조업	10	식료품 제조업	10명 미만
	11	음료 제조업	
	12	담배 제조업	
	13	섬유제품 제조업	
	14	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
	15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
	16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	
	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
	18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
	19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
	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
	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
	22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
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	
24	1차 금속 제조업	120억원 이하	
25	금속 가공제품 제조업	120억원 이하	
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120억원 이하	
27	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	80억원 이하	
28	전기장비 제조업	120억원 이하	
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120억원 이하	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120억원 이하	

업 종 (*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)			소기업기준 (평균매출액)	상시근로자 기준
C. 제조업	31	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80억원 이하	10명 미만
		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피물 제조업 중 철도차량용 의자제조업에 한정	120억원 이하	
		32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에 한정	120억원 이하	
	32 가구 제조업	120억원 이하		
	33 기타 제품 제조업	80억원 이하		
	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10억원 이하		
D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		120억원 이하	
E. 수도 하수 및 폐물 처리 원 료재생업	36 수도업		120억원 이하	5명 미만
	37 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	30억원 이하	
	38 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		30억원 이하	
	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		30억원 이하	
F. 건설업			80억원 이하	10명 미만
G. 도매 및 소매업			50억원 이하	5명 미만
H. 운수 및 창고업			80억원 이하	10명 미만
I. 숙박 및 음식점업			10억원 이하	
J. 정보통신업			50억원 이하	
K. 금융 및 보험업			80억원 이하	
L. 부동산업			30억원 이하	
M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		30억원 이하	5명 미만
N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		30억원 이하	
P. 교육 서비스업			10억원 이하	
Q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		10억원 이하	
R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		30억원 이하	
S.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		10억원 이하	

참고2**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□ 추진일정

연번	시기	추진항목	주요내용	주체
1	4월 ~ 5월	참가기업 모집&평가	· 참가기업 모집(2주간, BEPA)	BEPA
2		참가기업 선정, 업무회의 개최	· 참가기업 7개사 선정 · 참가기업 업무회의 개최 - 사업안내 및 참가기업 업무협약 체결	BEPA, 참가기업
3	5월 ~	수출역량 확보	· 수출역량 진단(필수) - 부산수출원스톱센터 수출전문위원과 1:1 컨설팅을 통한 수출역량 진단 · 수출역량 강화 - 전문가 초청 집체 교육(1회차) - 참가기업이 선택한 필요사항 중심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	BEPA, 참가기업
4	5월 ~ 12월	수출교육 참여	· 수출원스톱센터 교육 프로그램 참여	BEPA, 참가기업
5	6월	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참여	· 부산시 해외무역사무소 소재지 바이어와 1:1 비즈니스 상담	BEPA, 무역사무소, 참가기업
6	8월	중간점검	· 기업별 상반기 추진성과 점검 및 하반기 추진방향 논의 - 줌 업무회의 또는 설명회 개최	BEPA
7	9월	아세안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참여	·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국가 바이어와 1:1 비즈니스 상담	BEPA, 참가기업
8	10월	사절단 파견	· 말레이시아 파견 현지 상담회 개최 - 현지 수출상담회 참여 및 산업시찰 등	BEPA, 참가기업, 수행업체
9		해외통상자문위원 초청 상담회	· 부산시 해외통상자문위원(바이어)와 1:1 진출(구매)상담	BEPA, 참가기업
10	11월	수출역량 확보	· 수출역량 강화(공통) - 전문가 초청 집체 교육(2회차)	BEPA, 참가기업
11	12월	최종 결과보고	· 사업추진 최종성과 취합 및 결과보고	BEPA

※ 세부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